

의안번호	2215992
의 퇴 인	박형수 의원
회 답 일	2026. 5. 13.
추계번호	26B020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의3(농어업인에 대한 유류비 등 지원)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나 전기·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7조의3(농어업인에 대한 유류비 등 지원)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농어업인에 대한 유류비 등 지원(안 제17조의3 신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나 전기·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나 전기·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수, 에너지원별 지원단가, 지원물량, 지급기간 등의 구체적 자료가 필요함

- 다만, 현 시점에서는 향후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수, 에너지원별 지원단가, 지원물량, 지급기간, 국비·지방비 분담률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개정안은 지원 대상·기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¹⁾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유류비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유류비 또는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중임
 - 농어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²⁾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유가 변동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비 등을 상황에 맞추어 지원하고 있음
 -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가구 이상 701,300원 등 전체 평균 가구당 367,000원을 지원하고 있음

[표 2] 유가변동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2022	2023	2024	2025	2026
농업용 면세유 유가변동 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151		70		623
어업인 면세유 유가변동 보조금	해양수산부	239		45		562
에너지바우처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2,034	2,201	4,709	4,797	4,88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1) 제17조의3(농어업인에 대한 유류비 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생략)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assembly.go.kr